

## 범죄두려움 측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정서와 인지적 평가로서의 범죄두려움\*

안재경\*\* · 최이문\*\*\*

### 국 | 문 | 요 | 약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범죄두려움은 실제 범죄 발생률과 차이가 있다. 범죄현상과 범죄두려움 간의 차이는 범죄두려움이 현실적으로 높기 때문일 수 있지만, 범죄두려움의 측정이 현실을 반영하기에 불완전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범죄두려움을 정서(일반적두려움: '지난 1년동안, 범죄피해자가 될지 모를까 봐 걱정된 적이 있습니까?')와, 인지적 평가(구체적두려움: 발생가능성과 피해심각성의 '위험인식'의 문항으로 변경)로 정의하고, 일반인 22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기존 문항과 수정문항의 일반적 범죄두려움 차이를 비교하여 측정값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두 유형의 범죄두려움 모두 수정문항에서의 범죄두려움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았다. 한편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소인 성별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수정된 문항의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에서 성별의 효과는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성별 자체가 아닌 성별이 형성하는 범죄위험에 대한 주관적 수준의 인식과 위험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형성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한 결과이다. 본 실증연구를 통해 전국 대규모 수준에서 범죄두려움을 조사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연구인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관련 문항의 보완과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3.3.31.1.105>.

❖ 주제어 : 범죄두려움, 일반적두려움, 구체적두려움, 위험인식,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2023년도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 제 1저자, 한남대학교 강사, 범죄학 박사.

\*\*\* 교신저자,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E-mail: yimoon@police.ac.kr

## I. 서론

범죄두려움은 실제 발생하는 범죄현상과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다. 한국의 전체 범죄 발생율은 2010년 인구 십만 명당 1,895건에서 2020년 2,015건<sup>1)</sup>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등과 같은 일반적 두려움의 측정문항에 대한 응답수치는 오히려 감소<sup>2)</sup>하고 있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범죄는 2011년 233,470건에서 2020년 347,675건으로 49%나 증가<sup>3)</sup>했음에도 ‘재산범죄두려움’은 감소<sup>4)</sup>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성폭력(강간 포함)은 2010년 인구 십만 명당 40.2건, 2015년 60.9건, 2020년 58.1건 등으로 절대적인 수치는 다른 형법범죄에 비해 적음에도 불구하고,<sup>5)</sup> 여성에게 있어 범죄두려움이 높은 유형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거론된다(박형민 외, 2021). 이처럼 성별마다, 범죄의 유형마다 범죄증감율과 범죄두려움에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개인의 표상하는 범죄에 대한 인식과 생각에 따라 범죄두려움이 영향을 받고, 정의나 측정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범죄 발생과 범죄두려움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 내지 범죄현상에 비해 범죄두려움이 상당히 높은 현상은 현실적으로 범죄두려움이 갖는 추상적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일

- 1) 연도별 전체 형법범죄의 추이는 2010년 1,895건, 2012년 2,069건, 2014년 2,003건, 2016년 1,964건, 2018년 1,916건, 2020년 2,01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국가지표체계, 「범죄율」의 형법범죄율 중 ‘전체 형법범죄’에 대한 수치로, 해당 자료는 검찰청의 「범죄분석」 각 연도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0년 기준)」 자료에 기반하여 재구성된 것이다(<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2>, 2022. 11. 19. 최종접속).
- 2) 일반적 범죄두려움의 평균을 연도별로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모두 2013년 이래 평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3년~2019년 간 연도별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김민영 외, 2019, 303면, 표 9-4-2 일반적 범죄두려움의 조사연도별 비교; 박형민 외, 2021).
- 3) 경찰청. 주요 경제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중 ‘사기죄’(<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e0202.jsp>, 2022. 11. 19. 최종접속).
- 4) 재산범죄두려움의 조사연도별 비교를 살펴보면, 조사연도 기준 2013년 2.37점, 2015년 2.21점, 2017년 2.17점, 2019년 2.09점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김민영 외, 2019).
- 5) 국가지표체계. 「범죄율」(<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22022>. 11. 19. 최종접속)의 형법범죄율 중 ‘전체 형법범죄’ 성폭력(강간 포함)에 대한 수치이다. 2010년 폭력범죄는 인구 십만 명당 221.1건, 2015년 316.8건, 2020년 277.0건이었고, 절도범죄는 2010년 540.8건, 2015년 483.0건, 2020년 347.4건을 기록했다.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두려움 개념의 측정이 현실을 반영하는데 부족한 데서 기인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추상적이며 주관적인 속성을 갖는 범죄두려움의 개념 정의와 측정에 있어서 동일성이 확보되지 않고, 현실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기에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일반적 범죄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문항인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의 문항은 범죄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지만, 해당 문항에서 사용하는 ‘밤’, ‘혼자’ 등의 표현은 일반적인 범죄두려움이 아닌 성범죄두려움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Roberts, 2014). 이로 인해, 해당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범죄두려움의 측정에는 아직까지도 이견이 존재하고, 국외문헌에서는 범죄두려움의 현상을 보다 정확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현재까지도 진행되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범죄두려움을 조사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조사인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범죄두려움 문항은 비용 효율성과 문항의 간결함으로 인해 과거 개발되었던 조사문항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국내의 범죄두려움 관련 선행연구 또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자료를 재분석하는 등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측정문항의 개선이나 수정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범죄두려움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기존 문항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보다 구체화한 측정을 실시하였다. 범죄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심리상태’인 ‘범죄두려움’이 범죄의 발생과 일치하지 않는 현상은 해당 개념에 대한 측정의 방법의 오류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sup>6)</sup> 이에, 범죄두려움 개념정의에

6)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연간 사기 범죄 건수는 최근 4년간 증가추세로, 2017년 23만 1,489건을 기록한 사기 범죄 건수는 2018년 27만 29건, 2019년 30만 4,472건, 2020년 34만 7,67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체 범죄에서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7년 13.9%에서 2020년 21.9%로 8%p 증가했다. 반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범죄두려움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차이가 존재하였다. 폭력범죄의 경우 2010년부터 실제 범죄 발생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2020년 최저 수치를 기록하는 반면 범죄두려움은 2020년 다시 증가하여 차이가 존재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경우 범죄두려움은 2010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지속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가장 최근인 2020년의 범죄두려움 수치는 지난 10년간의 조사 중 가장 낮았다. 강간·강제추행을 포함한 성폭력범죄 발생율은 연간 2만건 대를 기록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그 증감율이 3.1%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두려움의 수치는

대한 비판을 보완하고, 범죄두려움의 측정을 구체적이며 실증적으로 시도할 것이다.<sup>7)</sup>

## II. 이론적배경

### 1. 범죄두려움의 개념

현재까지 실시되어온 범죄두려움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면 개념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범죄로부터 발생하는 정서적 반응 또는 범죄와 연관시키는 상징’(Ferraro & LaGrange, 1987)이며, 둘째는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인 범죄에 대한 반응’(Ferraro & LaGrange, 1987; Ferraro, 1995; Pleysier, 2009)이다. 정서적 측면이 주로 감정, 예컨대 행동 성향(Frijda et al., 2000), 사회와 지역사회의 범죄 문제에 대한 불안, 범죄 위협에 대한 일련의 구체적인 걱정을 포함(Farrall & Gadd, 2004; Garofalo & Laub, 1978; Hough, 2004, Jackson, 2004). 한다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인지적 구성요소는 범죄 위협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는 차이가 있다(Jackson, 2011; Warr, 1987). 정서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의 가장 큰 차이는 인지적 차원으로서의 범죄 두려움이 실제 정서적 반응에 선행하여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포함하는 반면, 정서적 차원은 이러한 평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인지적 차원으로서의 범죄두려움은 피해가능성, 피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기 때문에, 범죄 발생을 예방하거나, 범죄상황 발생 시 특정 방향으로 행위하려는 반응과 감정을 포함하는 정서적 차원의 범죄두려움과는 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다(Warr, 1987; Ferraro, 1995;

---

일건 직관과 부합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폭력범죄는 같은 시기 123% 증가하였고 이를 별도의 범죄두려움 유형으로 측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유형의 성폭력범죄 두려움에 대한 측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7) 범죄두려움의 측정 문항은 항목의 간결함과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뛰어나 다수의 연구들에서 오랜시간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왔다. 무엇보다,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Farrall & Gadd, 2004; Vanderveen, 2006). 본 단일문항은 지난 15년간 일반적 두려움을 측정해온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문항에서도 현재까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문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설문 내용을 변경할 경우 과거 조사 내용과 비교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범죄두려움 문항을 수정하기보다, 범죄양상의 변화와 국가통계 설문지 기능의 개선을 위해 측정방안을 추가하는 형태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Jackson, 2011, 2013).

범죄에 대한 심적 근접성을 강하게 느끼고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판단하는 정서적 평가란 ‘범죄로부터 발생하는 정서적 반응 또는 범죄와 연관시키는 상징’(Ferraro & LaGrange, 1987)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내림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포함하는데, 첫째는 ① 여러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서 존재하고 있는 범죄가 대중들에게 ‘확산되고 표현된 상태’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하게 된다는 범죄두려움(expressive fear of crime; 표현적 범죄두려움)의 일종이라는 것과, ② 해당 두려움을 즉각적이고 임박한 위협으로 인식할 때 개인에게 경험되는 범죄두려움(experienced fear of crime; 경험적 범죄두려움)이라는 것이다(Farrall & Gadd, 2004; Hough, 2004; Jackson, 2004).

한편 인지적 차원에서의 범죄두려움은 범죄라는 현상이 매우 근접하게 느껴지고, 범죄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믿을수록,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지각하게 된다(Bar-Anan et al., 2006; Todorov et al., 2007; Trope et al., 2007; Wakslak & Trope, 2009)는데 기반한다. 범죄학 문헌에서 ‘위험’이란 불확실하며 부정적인 현상의 영향과 그것이 일어날 발생 가능성에 의해 결정된다. 위협을 이루는 구성요소는 얼마나 발생가능한지(likelihood),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consequences), 해당 현상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controllability) 등이며, 개인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Killias, 1990; Gabriel & Greve, 2003; Farrall et al., 2009; Jackson, 2006, 2011).

위험인식으로 인해 형성되는 범죄두려움은 범죄의 발생가능성과 피해심각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기 때문에(Jackson, 2011), 개인이 얼마나 생생하고, 쉽게, 범죄의 심각성과 발생가능성을 정서적 이미지로서 상상할 수 있는지에 따라 범죄두려움이 결정될 수 있다. 범죄사건에 특히 취약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범죄를 심각한 결과와 연관시키고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여길 것이다. 즉,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할수록 강도, 폭력범죄, 때로는 성폭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Jackson, 2011). 범죄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식될수록, 인식된 위협은 더 높아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두려움의 수준도 증가한다(Warr, 1987). 그러므로 동일한 범죄현상이더라도 개개인은 그 심각성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2. 범죄두려움 측정

범죄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해당 범죄현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인지적 평가에 의해 정의내려진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특정 정보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개인적인 느낌을 평가의 척도로 활용하는데, 모호하고 복잡한 현상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보다 더 과장되게 판단할 수 있다(Ferraro & LaGrange, 1992). 표준적 질문으로 사용해왔던 ‘두려움’이 사용된 문항은 단어 자체가 갖는 모호함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위협에 대한 감정을 측정하는 것에 가까워 개인의 불안이나 염려를 상세히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Berenbaum, 2010). 이 경우 ‘두려움’이라는 표현은 표현의 모호성으로 인해 응답 시점 당시의 일회적인 감정상태를 반영하게 되고,<sup>8)</sup> 응답자로 하여금 범죄현상을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껴지게 만들며, 따라서 범죄두려움의 수준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반면 개인의 정서와 인지적인 평가를 수반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범죄현상은 보다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불안’이나 ‘걱정’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응답자는 범죄라는 위협현상에 대해 보다 객관적 평가를 내린다(Sacco 2005). 이 경우, 범죄두려움은 낮게 보고될 것이다.

‘두려움’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걱정’ 또는 ‘불안’으로 범죄두려움을 측정하는 시도가 있었다. 영국범죄조사(British Crime Survey, 현재는 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는 1984년 이후 ‘[도난/강도/차 도난]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고 있습니까?’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일상적인 걱정이나 두려움, 위협에 대한 감정적인 개인의 ‘태도’, 불안(Sacco 2005)을 측정하고 있다(Tourangeau et al., 2000; Jackson 2006; Farrall et al., 2009).<sup>9)</sup> 연구에 따르면 ‘두려움’이 아닌 ‘걱정’이라는 용어는 기존 문항이 갖는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Gouseti, 2016).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8) Forgas(1995)가 제시한 정서주입모델(Affect Infusion Model, AIM)에 따르면 모호한 현상은 보다 복잡한 평가를 수반하고, 이로 인해 평가 당시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받아 부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9) 2018~2019년에 이루어진 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CSWE)에서는 ‘당신은 ...행위에 대해 얼마나 걱정됩니까? (How worried are you about)...having your home broken into and something stolen?’의 문항을 사용하고 있으며, 답변은 매우 걱정됨(very worried), 꽤 걱정됨(Fairly worried), 그리 걱정되지않음(Not very worried), 전혀 걱정되지 않음(Not at all worried), 해당안됨(Not applicable)으로 구성되어있다.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와 같이 범죄두려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문항들은 범죄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두려움은 실제로 범죄에 대한 개인의 일상적인 불안이나 염려에 가깝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측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대표적인 측정문항들의 사용은 지양해야한다는 주장이다(Berenbaum, 2010).

국내의 경우 일반적 두려움의 측정방법은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와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로 구성되어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할 수정된 측정문항은 ‘지난 1년동안, 범죄 피해자가 될지 모를까봐 걱정된 적이 있습니까?([그렇다] 답변한 경우, 얼마나 자주 그러한 걱정을 하였습니까?)’로 구성하였다. 두 문항의 응답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현재 사용되는 있는 범죄두려움 측정에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실제 범죄 발생과 범죄두려움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구체적(유형별) 두려움의 경우에도 ‘인식된 위협’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범죄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의 인식을 측정해 기존의 응답과 비교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 두려움 문항인 ‘귀하는 (각 항목의 범죄)를 당할까 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는 범죄현상이라는 위협상황에 대해 개인의 인지된 위협성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Farrall & Gadd, 2004; Farrall et al., 1997), 위협인식으로서의 범죄두려움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즉 ‘발생가능성’과 ‘결과의 심각성’으로 대체한 측정문항을 사용하여 기존의 응답과 비교하였다.<sup>10)</sup>

위험인식으로서 구체적 범죄두려움을 측정하는 경우 설문 응답자가 ‘범죄를 당했을 때의 고통’을 상상하기 보다는 ‘범죄를 당했을 때 어느 정도 고통을 느낄 것으로 예상’되

10) 위험인식은 범죄위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범죄의 심각성, 발생가능성이라는 일련의 인지적 평가에 따라 형성된다. 만약 범죄로 인해 개인에게 미치는 심각성이 크고(Warr, 1987), 통제하기 어려우며(Jackson, 2011), 발생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할수록(Jackson, 2013) 그에 대한 범죄두려움도 증가할 것이다. 위험인식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거론되는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 요인을 포함시켜야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명료성을 고려하여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위험인식과 범죄두려움의 관련성을 제시한 실증연구 중 하나인 Jackson과 Gouseti(2016)의 모형에서는 폭력범죄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폭력, 성폭력, 사기범죄 시나리오를 포함해 조사하였다.

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잘 예측하지 못하며 예측한 정서 상태는 실제의 미래 경험과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다(Wilson & Gilbert, 2003). 다시말해, 미래의 정서사건이 자신에게 부정적 일지 혹은 긍정적 일지에 대한 정서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일명 ‘정서 예측’(Affective forecasting)에 대한 인간의 정확성은 매우 낮다(안소현 외, 2019). 따라서, 범죄라는 위험현상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 또한 개인이 예상(인식)하는 두려움(위험)의 수준과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실제 범죄두려움의 핵심이 되는 피해가능성과 결과심각성을 평가하도록 할 경우 기존 표준적 질문으로 사용해왔던 범죄두려움 측정 문항에 비해 위험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범죄두려움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범죄두려움의 측정을 위해 정서와 인지적 차원, 즉 두 가지 차원을 모두 사용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이고 다각도적인 측정을 실시하고자 했다. 일반적 두려움을 ‘예상되는 걱정’의 정도에 대한 질문으로서 측정하는 것은 정서적 차원으로서의 범죄두려움 측면을 강조한 질문이며, 발생가능성과 피해심각성으로 구성된 ‘인식된 위험’으로서의 구체적 범죄두려움 측정은 인지적 차원으로서의 범죄두려움을 강조한 질문이다(Sheeran et al., 2014). 이를 통해 범죄두려움을 보다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측정하고자 했다.

나이가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에 대한 범죄두려움을 측정하여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문항을 사용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성폭력범죄와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측정하였다.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는 재산범죄, 폭력범죄, 그리고 성폭력범죄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범죄에 대한 구체적 두려움을 측정해오고 있는데, 이들의 실제 범죄 발생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디지털성폭력범죄와 보이스피싱범죄는 증가하고 있어 측정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sup>11)</sup> 경찰통계자료에 따르면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절도’의 경우 양적으로는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 7년간의 증감율은 32% 감소하여 하락추세에 있다. 마찬가지로, 폭력범죄인 폭력과 강도 또한 각 8%,

11) 경찰청, 경찰통계자료, 「5대범죄 발생, 검거 현황」(<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202.jsp>, 2022. 10. 9. 최종접속); 경찰청, 경찰통계자료 「전체 사이버범죄 발생·검거 현황」(<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204.jsp>, 2022. 10. 9. 최종접속).

58% 감소하여 양적으로 크게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전통적 성범죄 또한 7년간 약 3%만이 증가해 큰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사기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이용범죄나 사이버음란물, 사이버스토킹 등을 포함한 불법콘텐츠범죄는 지난 7년간 각 123%, 64% 증가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표 1>). 종합하면, 구체적 범죄두려움 측정시 정보통신망이용범죄와 불법콘텐츠범죄를 포함할 필요가 있고,<sup>12)</sup> 이를 통해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범죄두려움 측정에서 다루지 못한 범죄 유형들에 대한 두려움도 측정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표 1> 경찰청, 경찰통계자료 유형별 범죄 발생률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율
강도	1,586	1,445	1,149	965	818	798	662	-58.3
강간·강제추행 <sup>2)</sup>	21,045	21,280	22,193	24,106	23,467	23,531	21,702	3.1
절도	266,059	245,121	202,874	183,565	176,613	186,649	179,315	-32.6
폭력 <sup>3)</sup>	289,460	305,256	308,776	292,524	286,599	287,257	265,148	-8.4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89,519	118,362	121,867	107,271	123,677	151,916	199,594	123.0
불법콘텐츠범죄	18,299	23,163	28,438	21,307	23,039	24,945	30,160	64.8

- 1) 살인은 형법상의 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촉탁·승락살인, 자살교사·방조, 위례·위력·촉탁·승락살인 포함(미수·교사·방조·예비 등 포함)
- 2) 강간·강제추행은 2010년부터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등상해, 강간치사·상, 강제추행치사·상, 강간등살인, 미성년자등간음·추행, 피보호자(감호자)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강간살인), 유사강간, 유사성행위와 특별법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제3조 내지 제11조)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 내지 제10조)을 포함(미수·교사·방조·예비 등 포함)
- 3) 폭력은 형법상의 폭행, 상해,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공갈, 손괴와 특별법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행위를 합한 것임.

12) 다만 연구수집과정의 한계상 보통신망이용범죄와 불법콘텐츠범죄에 해당하는 세부유형을 모두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사기, 그리고 불법촬영(유포)만으로 한정하여 질문하였다.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서 폭력범죄의 하위문항으로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전화 등으로 겁오히게 괴롭힐까 봐 두렵다’를 측정하여 폭력범죄 중 ‘괴롭힘’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범죄유형으로는 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을 활용한 사기범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기 범죄에 대한 문항을 보이스피싱 범죄로 한정해 측정할 것이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내용

연구목적에 따라 조사할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정리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 ①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일반적 범죄두려움 측정문항과 ‘걱정(worry)’의 감정을 고려하여 수정한 일반적 두려움 문항의 응답 차이를 비교한다.
- ②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구체적 범죄두려움과 위협인식을 고려하여 수정한 구체적 두려움 문항의 응답 차이를 비교한다.

<표 2> 범죄두려움 개념의 측정문항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본 연구
일반적 두려움	Q.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매우 그렇다: 5) ①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②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Q. 귀하는 지난 1년동안, 범죄피해자가 될지 모를까봐 걱정된 적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Q. [그렇다] 답변한 경우: 얼마나 자주 그러한 걱정을 하였습니까? ① 아주 가끔 ② 가끔 ③ 자주 ④ 매우 자주
구체적 두려움	Q.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의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매우 그렇다: 5) ① 누군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 봐 두렵다 ② 누군가 강제로 내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 갈까 봐 두렵다 ③ 누군가 나를 구타(폭행)하여 다치게 할까 봐 두렵다 ④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 내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렵다 ⑤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할까 봐 두렵다 ⑥ 누군가 내 물건이나 재산을 부수거나 못쓰게 할까 봐 두렵다 ⑦ 누군가 내 집에 침입할까 봐 두렵다 ⑧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전화 등으로 집요하게 괴롭힐까 봐 두렵다	다음의 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상황별로 각 네 문항 제시)  <누군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감> <누군가 나를 구타하거나 폭행하여 다치게 함>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 함> <누군가 나의 신체, 사생활을 디지털기기로 몰래 촬영함, 또는 이를 유포함> <누군가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재산을 갈취함> Q. 위와 같은 유형의 범죄피해가 향후 12개월 내 귀하에게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 위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 지난 12개월 동안,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걱정할 적이 있습니까?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범죄두려움 측정을 대규모로 실시하고, 측정방법의 비교를 실시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해외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연구의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범죄두려움 문항 수정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대상자 절반에게는 기존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문항을, 나머지 절반에게는 수정문항을 사용하였다.<sup>13)</sup> 구체적인 효과 평가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Gouseti(2016)의 연구에서 ‘얼마나 두렵습니까?’의 문항보다는 ‘얼마나 걱정됩니까?’의 문항으로 질문하였을 때 그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던 결과를 참고하였다. 실제로 영국범죄피해조사(CSEW)는 ‘얼마나 두렵습니까?’의 문항이 범죄두려움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사용되어온 ‘걱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이 경우 대중들의 범죄두려움 정도는 더 낮아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 2.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 활용할 자료는 설문조사자료이다. 연구대상자는 전국범죄피해조사의 표본설계를 참고로 하여 20대부터 60세 이상 까지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설문은 수행은 조사전문업체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수행되었다. 범죄두려움의 측정 문항과 해석수준에 따라 총 두 가지 버전의 설문지가 제작되었고 참여자에게 무선택당하여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은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 패널 가입자 전체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범죄두려움 측정에 관한 두 유형(i.e. 기존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문항과 수정된 위협인식으로서의 범죄두려움 문항) 두 유형으로 나뉜다. 이에, 패널 가입자가 무작위적으로 두 조건 중 하나에 할당되도록 설정하였으며 표집(표본)이 응답한 결과 중 불성실한 응답(e.g. 끝까지 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응답자, 중복된 응답이 많은 응답자, 불성실한 응답자 등)을 제외하고, 유효 응답 221명에 대한 결과를 얻었다.<sup>14)</sup> 사용한 조사방법은 스마트폰 온라인 조사(SOS; Smartphone Online Survey)로 기존

13) 범죄두려움 측정문항의 효과를 살펴보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동일 응답자에게 유사한 문항들을 사용해 두 번 응답을 얻게 되는 경우 순서효과로 인해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응답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응답이 정확히 포착되지 못할 수 있다. 나아가, 응답지의 길이로 인해 피로도가 높아져 응답율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응답자 절반을 임의로 나누어 각 버전의 설문지를 무작위 할당하는 형태로 측정하였다.

14) 범죄두려움 측정문항에서 기존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문항에 대한 응답은 116명, 수정문항에 대한 응답은 105명에 대한 응답치를 얻었다.

에 존재하는 스마트폰웹조사(SWS' Smartphone Web Survey)에서 비롯된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인구학적인 데이터(e.g. 성별, 연령, 지역)에 기반한 패널에서 추출한 표집을 온라인 조사 중 하나인 스마트폰을 사용해 설문조사결과를 얻는 조사방법이다. 연구시작 전 보건복지부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승인(승인번호: P01-202208-01-024, 연구수행기간: 2022년 8월 16일~2022년 10월 31일)을 받았으며, 승인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를 구성하고 실시했다.

〈표 3〉 설문대상자 기술통계

(단위: 명, %)

구분		비율
성별	남성	156 (70.6%)
	여성	65 (29.4%)
연령대	20대	16 (7.2%)
	30대	33 (14.9%)
	40대	48 (21.7%)
	50대	70 (31.7%)
	60대 이상	54 (24.5%)
혼인상태	미혼, 비혼	40 (18.1%)
	별거	4 (1.8%)
	사별	5 (2.3%)
	사실혼 (기혼 포함)	140 (63.3%)
	이혼	19 (8.6%)
자녀유무	기타	13 (5.9%)
	있음	168 (92.8%)
	없음	13 (7.2%)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미만
초등학교 졸업		6 (2.7%)
중학교 졸업		85 (38.5%)
고등학교 졸업		112 (50.7%)
대학교 졸업		16 (7.2%)
장애여부	있음	15 (6.8%)
	없음	206 (93.2%)
직업유무	있음	181 (81.9%)
	없음	40 (18.1%)
직업유형	사무 종사자	30 (13.6%)
	서비스 종사자	40 (18.1%)
	판매 종사자	6 (2.7%)
	농림어업 종사자	2 (0.9%)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7 (3.2%)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8 (3.6%)

구분		비율
	단순노무 종사자	10 (4.5%)
	군인	1 (0.5%)
	관리자	37 (16.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1 (14.0%)
	기타	9 (4.1%)
	무응답	40 (18.0%)
가족구성원	혼자 살고있음(1인가구)	37 (16.7%)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	180 (81.4%)
	연인 또는 사귀는 사람	3 (1.4%)
	친구 등 아는 사람	1 (0.5%)
총 가구소득	소득 없음	16 (7.2%)
	100만 원 미만	8 (3.6%)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18 (8.1%)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47 (21.3%)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47 (21.3%)
	4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36 (16.3%)
	500만 원 이상 ~ 600만 원 미만	16 (7.2%)
범죄피해여부	600만 원 이상	33 (14.9%)
	있음	115 (52.0%)
피해범죄유형	없음	106 (48.0%)
	폭행, 구타 등	12 (10.5%)
	사기	92 (80.0%)
	성폭행, 성추행 등	6 (5.2%)
지인범죄피해 여부	기타	5 (4.3%)
	있음	144 (65.2%)
범죄피해 경험한 지인과의 관계	없음	77 (34.8%)
	친구 등 아는 사람	103 (46.6%)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36 (25.0%)
	연인 또는 사귀는 사람	5 (3.5%)
무응답		77 (24.9%)
전체		2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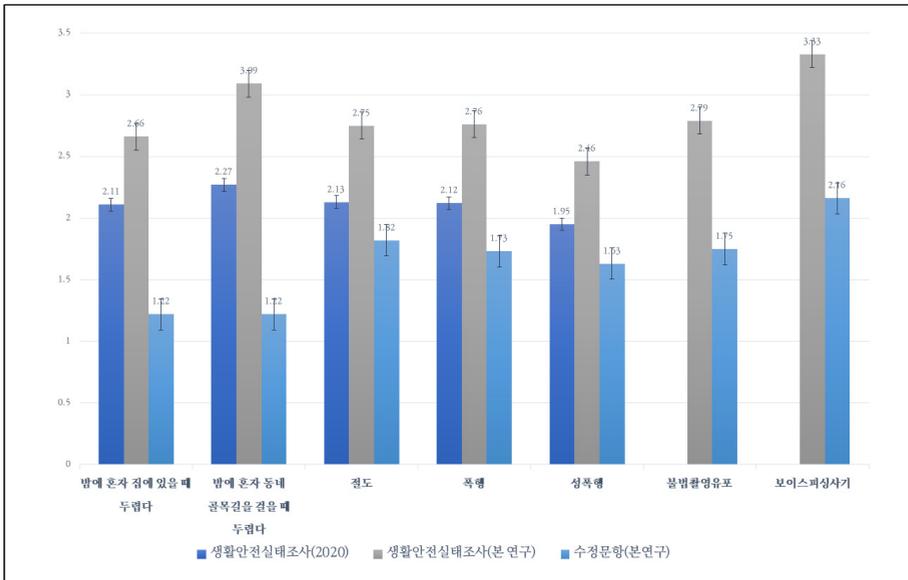
## IV. 연구결과

### 1. 범죄두려움 측정

측정문항에 따른 범죄두려움을 비교하기 위해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서 조사한 일 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의 평균 문항값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평균 문항값을 비교하

였다. 표본의 차이로 인해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와의 직접적인 통계적 비교는 어렵기 때문에 평균 수치만을 비교하였다(그림 1).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본 연구)’ 문항은 기존 ‘범죄두려움’ 문항을 사용하여 본 연구를 위해 새로 측정된 것이며, ‘수정문항(본 연구)’ 문항의 경우 일반적 두려움을 ‘지난 1년동안, 범죄피해자가 될지 모를까봐 걱정된 적이 있습니까?’로, 구체적 두려움은 ‘위험인식’의 문항으로 변경해 수집한 측정치이다. 본 논문 작성 시점 가장 최근에 공개된 2020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측정치를 본 연구의 수치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수집한 ‘범죄두려움’ 문항을 사용한 일반적, 구체적 두려움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수정된 문항을 사용한 경우 2020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측정치보다 모두 낮았다. 불법촬영유무 두려움과 보이스피싱사기범죄는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서 수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 비교는 할 수 없었으나 절도와 성폭행범죄의 수치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림 1]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와 본 연구의 범죄두려움(일반적, 구체적) 비교



주: 1)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본 연구) 문항의 첫 두 문항은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와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대신 ‘지난 1년동안, 범죄피해자가 될지 모를까봐 걱정된 적이 있습니까?’로 대체하여 측정한 값임  
 2) 불법촬영유무와 보이스피싱사기의 경우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서 별도로 수집하지 않아 함께 비교·제시하지 못하였음

## 2. 일반적 범죄두려움

기존 문항과 수정문항의 일반적 범죄두려움 차이를 비교하여 측정값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일반적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두 문항(‘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을 ‘지난 1년동안, 범죄피해자가 될지 모를까봐 걱정된 적이 있습니까?’의 수정문항과 각각 비교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수정문항에서의 범죄두려움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았다(<표 4>).

〈표 4〉 일반적 두려움 문항비교

	구분	n	Mean	SD	t	p
일반적 두려움 <sup>1</sup>	‘밤에 혼자 있을 때 두렵다’	116	2.66	1.16	12.04	.000***
	지난 1년동안, 범죄피해자가 될지 모를까봐 걱정된 적이 있다	105	1.22	0.42		
일반적 두려움 <sup>2</sup>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116	3.09	1.21	15.08	.000***
	지난 1년동안, 범죄피해자가 될지 모를까봐 걱정된 적이 있다	105	1.22	0.42		

\* $p < .05$ , \*\* $p < .01$  \*\*\* $p < .001$

다음으로 빈도(frequency)적 측정을 위해 ‘지난 1년간 범죄피해자가 될지 모를까 봐 걱정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살펴본 결과 전체 105명 중 23명에 불과했으며, 이 중 ‘아주 가끔’이 5명(21.7%), ‘가끔’이 14명(60.9%), ‘자주’와 ‘매우 자주’가 각 2명(8.7%)으로 지난 1년간 범죄피해에 대해 걱정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서도 매우 적은 수의 응답자만이 범죄피해에 대해 걱정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이러한 결과는 범죄두려움 측정 시 특정기간(‘지난 12개월 동안’)과 같은 빈도적 측정과, 개인의 정서적 측면(‘걱정’)의 문항을 사용하였을 때 범죄두려움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5〉 범죄피해자 가능성의 우려에 대한 빈도측정 결과

지난 1년간 범죄피해자가 될지 모를까봐 걱정된 적이 있다	%
아주 가끔	21.7
가끔	60.9
자주	8.7
매우 자주	8.7
	100

수정된 일반적 두려움 문항에 대한 답변이 더 낮은 수치의 두려움을 보고하였기 때문에, 개선된 문항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소인 성별과 범죄피해여부가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범죄두려움 응답에 각 요인의 효과가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6>).

먼저 일반적 두려움 두 문항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와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모두에 성별이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일반적 두려움 측정에 대한 답변(‘두렵다’)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두려움의 수준이 높았다. 반면 지난 1년 간 범죄에 대한 우려를 측정한 수정된 일반적 두려움 문항(‘지난 1년 동안, 범죄피해자가 될지 모를까봐 걱정된 적이 있습니까?’)에서 성별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간접적 범죄피해’의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 두려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성별’의 효과가 수정된 일반적 두려움 측정문항에서는 나타나지 않음을 시사한다. 대신, 친구, 가족, 연인 등과 같은 지인의 범죄피해가 존재할 수록 범죄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두려움을 수정하여 측정한 문항에선 간접피해경험이 성별보다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시사한다.

〈표 6〉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일반적 두려움과 수정된 일반적 두려움에 대한  
성별, 범죄피해여부의 영향

유형	$\beta$	t	$\rho$	confidence interval		R <sup>2</sup>
일반적 두려움1						
constant		4.17	0.00	1.17	3.29	0.36
성별	0.32	3.63	0.00***	0.37	1.26	
직접적범죄피해	-0.08	-0.84	0.40	-0.63	0.25	
간접적범죄피해	-0.08	-0.88	0.38	-0.67	0.26	
일반적 두려움2						
constant		3.33	0.00	0.69	2.70	0.52
성별	0.51	6.27	0.00***	0.91	1.75	
직접적범죄피해	-0.02	-0.22	0.82	-0.46	0.37	
간접적범죄피해	-0.06	-0.72	0.47	-0.60	0.28	
지난 1년간 범죄에 대한 우려						
constant		4.51	0.00	0.54	1.40	0.20
성별	0.07	0.74	0.46	-0.11	0.25	
직접적범죄피해	-0.10	-0.96	0.34	-0.26	0.09	
간접적범죄피해	0.20	1.94	0.05 <sup>†</sup>	-0.00	0.36	

\*\*\* $p < .001$ , <sup>†</sup> $p < .1$  (marginally significant)

### 3. 구체적 범죄두려움

기존 구체적 두려움 문항은 [(특정유형의 범죄)에 대해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로 측정하며, 본 연구에서 실시한 위험인식 문항은 특정 범죄현상에 대한 발생가능성과 피해심각성으로 구성된 문항으로 측정했다. 두 측정문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 구체적 두려움의 범죄유형 중 불법촬영과 불법촬영유포는 두 문항으로 측정(‘누군가 동의 없이 나의 신체 및 사생활을 디지털기기로 촬영할까봐 두렵다’ 과 ‘누군가 디지털기기로 촬영한 나의 신체, 사생활 장면이 어딘가에 유포될까봐 두렵다’) 하여 두 응답의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수정된 구체적 두려움 문항은 선행연구의 논의에 따라 발생가능성, 피해심각성 두 요인을 곱한 후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로그화하였다.

분석결과, 재산범죄, 폭행범죄, 성폭행범죄, 불법촬영유포, 보이스피싱사기 다섯 가지의 모든 범죄유형에서 기존 문항에 비해 위험인식 문항의 범죄두려움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구체적 두려움과 수정된 구체적 두려움의 비교

구분		n	Mean	SD	t	p
재산	범죄두려움	116	2.74	1.04	7.49	.000***
	위험인식	105	1.82	0.78		
폭행	범죄두려움	116	2.77	1.02	8.11	.000***
	위험인식	105	1.74	0.86		
성폭행	범죄두려움	116	2.47	1.11	6.52	.000***
	위험인식	105	1.63	0.78		
불법촬영 유포	범죄두려움	116	2.79	1.16	7.86	.000***
	위험인식	105	1.75	0.79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두려움	116	3.33	1.15	9.35	.000***
	위험인식	105	2.16	0.67		

\* $p < .05$ , \*\* $p < .01$  \*\*\* $p < .001$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측정문항의 차이로도 구체적 두려움의 수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국범죄피해조사(CSEW)에서 또한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판단을 포함한 문항의 사용이 기존 ‘두려움’을 활용한 측정보다 낮은 수준의 범죄두려움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고했으며, 개인의 인식적 차원에서의 범죄두려움 측정이 보다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측정임을 보고했다.

다음으로 구체적 범죄두려움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범죄두려움 측정과 위험인식 측정을 나누어 각각의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두 측정에서 모두 구체적 두려움 간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특정 범죄유형의 두려움(위험인식)이 높은 응답자는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위험인식) 또한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8〉 범죄유형별 상관관계(범죄두려움 측정)

	[1]	[2]	[3]	[4]	[5]
[1] 재산범죄	1				
[2] 폭행범죄	.849**	1			
[3] 성폭력범죄	.728***	.766***	1		
[4] 불법촬영 유포	.709***	.794***	.779***	1	
[5] 보이스피싱 사기	.567***	.664***	.491***	.662***	1

\* $p < .05$ , \*\* $p < .01$  \*\*\* $p < .001$

〈표 9〉 범죄유형별 상관관계(위험인식측정)

	[1]	[2]	[3]	[4]	[5]
[1] 재산범죄	1				
[2] 폭행범죄	.776***	1			
[3] 성폭력범죄	.518***	.651***	1		
[4] 불법촬영 유포	.504***	.575***	.768***	1	
[5] 보이스피싱 사기	.544***	.727***	.590***	.575***	1

\* $p < .05$ , \*\* $p < .01$  \*\*\* $p < .001$

한편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범죄라는 위험성에 대한 평가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각 범죄유형별로 개인의 ‘범죄에 대한 정서적 우려(걱정)’가 현재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위험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범죄에 대한 정서적 우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적 범죄피해경험, 타인의 간접적 범죄피해경험, 성별을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범죄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정서적 우려(‘걱정’)가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유형	$\beta$	t	p	confidence interval		R <sup>2</sup>
절도범죄 위험인식						
constant		3.41	0.00	0.49	1.87	
절도에 대한 걱정	0.62	7.79	0.00***	0.33	0.56	
성별	-0.08	-0.98	0.33	-0.41	0.14	0.62
직접적범죄피해	-0.05	-0.55	0.58	-0.34	0.19	
간접적범죄피해	-0.04	-0.43	0.67	-0.33	0.21	
폭력범죄 위험인식						
constant		2.10	0.04	0.04	1.53	
폭력에 대한 걱정	0.65	8.57	0.00***	0.42	0.68	
성별	-0.04	-0.52	0.60	-0.37	0.21	0.65
직접적범죄피해	-0.03	-0.42	0.68	-0.34	0.22	
간접적범죄피해	-0.02	-0.23	0.82	-0.33	0.26	
성폭력범죄 위험인식						
constant		2.53	0.01	0.17	1.43	
성폭력에 대한 걱정	0.63	8.25	0.00***	0.33	0.55	
성별	0.09	1.15	0.25	-0.11	0.42	0.67
직접적범죄피해	-0.08	-0.93	0.35	-0.37	0.13	
간접적범죄피해	-0.04	-0.52	0.60	-0.33	0.19	

유형	$\beta$	t	p	confidence interval		R <sup>2</sup>
불법유폐찰영범죄 위험인식						
constant		3.75	0.00	0.58	1.89	
불법유폐찰영에 대한 걱정	0.62	7.85	0.00***	0.32	0.53	0.65
성별	-0.04	-0.56	0.58	-0.35	0.20	
직접적범죄피해	-0.17	-2.08	0.04*	-0.53	-0.01	
간접적범죄피해	0.04	0.42	0.67	-0.21	0.32	
보이스피싱사기범죄 위험인식						
constant		3.40	0.00	0.44	1.67	
보이스피싱사기에 대한 걱정	0.59	7.22	0.00***	0.24	0.43	0.59
성별	-0.02	-0.30	0.76	-0.28	0.20	
직접적범죄피해	-0.02	-0.23	0.81	-0.26	0.21	
간접적범죄피해	0.09	1.03	0.30	-0.11	0.36	

\* $p < .05$ , \*\* $p < .01$  \*\*\* $p < .001$

그 결과 각 범죄에 대해 지난 12개월 간 경험했던 정서적 우려의 정도가 현재의 위험인식(i.e. 발생가능성과 피해심각성)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Jackson, 2011)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직접적 범죄피해, 간접적 범죄피해, 그리고 성별은 현재의 위험인식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범죄두려움의 성별, 범죄피해여부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비교를 실시하였으며, 집단의 데이터가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지 않아 맨위트니 U 검중(Mann-Whitney U test)을 실시했다.<sup>15)</sup> 분석결과 기존의 범죄두려움 문항에서 직접범죄피해경험자(<표 11>)와 간접범죄피해경험자(<표 12>) 모두 성폭행, 불법촬영유폐에 대한 두려움의 남녀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정 문항에선 성별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일반적 두려움 문항(‘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에서도 남녀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정된 측정문항(‘지난 1년동안, 범죄피해자가 될지 모를까 봐 걱정된 적이 있습니까?’)로 질문한 경우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15) 맨위트니 U 검정은 두 집단의 데이터가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거나 집단의 데이터가 작을 때 두 집단의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표 11) 직접범죄피해경험자의 일반적 및 구체적 두려움의 남녀차이

구분	문항	직접피해			Mann-Whitney test	
		남성 (n=45)	여성 (n=16)	<i>p</i>	U	Z
국민 생활 안전 실태 조사	일반적 두려움1	2,40±1,21	2,81±0,99	0,10	264,00	-1,65
	일반적 두려움2	2,71±1,20	3,75±0,93	0,00***	183,50	-3,00
	절도두려움	2,67±1,17	2,62±1,02	0,96	357,00	-0,05
	폭행두려움	2,72±1,19	2,87±0,87	0,23	291,00	-1,19
	성폭행두려움	2,13±1,18	2,87±1,15	0,02*	219,00	-2,42
	불법촬영유포두려움	2,39±1,23	3,32±1,11	0,01*	212,00	-2,48
	보이스피싱사기두려움	3,13±1,36	3,43±1,03	0,53	323,00	-0,62
구분	문항	남성 (n=43)	여성 (n=11)	<i>p</i>	Mann-Whitney test	
수정 문항	지난 1년간 범죄에 대한 우려	1,19±0,39	1,27±0,47	0,53	216,00	-0,63
	절도 위험인식	1,73±0,74	1,69±0,92	0,79	224,50	-0,26
	폭행 위험인식	1,72±0,73	1,52±1,06	0,98	235,50	-0,02
	성폭행 위험인식	1,47±0,78	1,78±0,70	0,09	159,00	-1,68
	불법촬영유포 위험인식	1,56±0,91	1,70±0,75	0,60	212,50	-0,52
	보이스피싱사기 위험인식	2,14±0,75	2,18±0,72	0,78	223,50	-0,28

\**p*<.05, \*\**p*<.01 \*\*\**p*<.001

간접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반적 두려움’ 두 문항 모두 여성의 두려움이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수정 문항에서는 해당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구체적 범죄두려움, 특히 성폭력범죄에 대한 남녀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측정문항의 측정문항의 수정만으로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기존의 문항과 달리 수정된 문항의 성별 효과가 사라지는 현상은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표 12〉 간접범죄피해경험자의 일반적 및 구체적 두려움의 남녀차이

구분	문항	간접피해			Mann-Whitney test	
		남성 (n=56)	여성 (n=21)	p	U	Z
국민 생활 안전 실태 조사	일반적 두려움1	2,32±1,16	3,14±1,15	0,00***	351,50	-2,83
	일반적 두려움2	2,64±1,15	3,90±0,94	0,00***	246,00	-4,04
	절도두려움	2,60±1,04	2,90±1,22	0,38	515,50	-0,88
	폭행두려움	2,64±1,08	3,14±1,06	0,07	436,50	-1,82
	성폭행두려움	2,20±1,08	3,19±1,25	0,00***	318,50	-3,22
	불법촬영유포두려움	2,48±1,15	3,40±1,17	0,00***	337,50	-2,93
	보이스피싱사기두려움	3,14±1,23	3,67±1,15	0,12	457,50	-1,54
구분	문항	남성 (n=50)	여성 (n=17)	p	Mann-Whitney test	
수정 문항	지난 1년간 범죄에 대한 우려	1,24±0,43	1,35±0,49	0,37	-0,90	377,00
	절도 위험인식	1,81±0,73	1,82±0,83	0,68	-0,41	397,00
	폭행 위험인식	1,79±0,76	1,59±0,99	0,71	-0,37	399,50
	성폭행 위험인식	1,51±0,82	1,86±0,63	0,05	-1,93	292,00
	불법촬영유포 위험인식	1,73±0,87	1,83±0,70	0,82	-0,23	409,00
	보이스피싱사기 위험인식	2,19±0,63	2,24±0,66	0,57	-0,57	385,50

\*p<.05, \*\*p<.01 \*\*\*p<.001

이러한 결과는 범죄두려움 문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상인 ‘남성에 비해 일반적으로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게 보고되는 여성의 높은 범죄두려움’(Ferraro, 1995; Fisher & May, 2009; Franklin & Franklin, 2009; LaGrange & Ferraro, 1989; Skogan & Maxfield, 1981; Snedker, 2010; Warr, 1984)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두려움 문헌이 공식범죄율과 여성의 범죄두려움 사이의 불일치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해왔던 이론들에 따르면 여성 스스로 느끼는 전반적인 취약성에 의한 것이거나(Goodey, 1994), 성폭력범죄에 대한 여성의 두려움이 다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이, 확대될 수 있다거나(Warr, 1984),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일상에 만연한 폭력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Sacco, 1990)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형성의 과정이 근본적으로는 남성의 두려움 형성과정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성별’이라는

요소만으로는 범죄두려움 형성과정에 기여하는 바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Madriz, 1997).

이러한 이유로 범죄두려움에서의 성별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선 성별 자체가 아닌 성별이 형성하는 범죄위험에 대한 인식(Cobbina et al., 2008)과 위험에 대한 평가가 중점으로 설명되어야한다는 논의가 등장하였다.<sup>16)</sup> 이에 따르면, 특정 유형의 범죄(e.g.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여성의 두려움이 다른 유형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단언할 수 없고, 성별이라는 요소 자체만으로는 범죄두려움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 즉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대한 높은 인식(Ferraro, 1995)을 설명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 모두 성별의 효과가 사라진 결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주관적 위험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범죄두려움이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지된 가능성과 그 심각성으로 측정된다는 Ferraro(1995)의 논의를 지지하는 것이다.

## V. 결론 및 논의

범죄두려움은 형사 사법 제도를 평가하고 설계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국가의 핵심적인 인프라인 형사사법제도를 구성할 때 범죄두려움은 활발히 활용되는 자료이지만, 실제 범죄율과 범죄두려움 간의 간극이 발생한다면 범죄두려움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수립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범죄두려움이 정책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자료가 되기 위해선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정확하게 측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김은경 외, 2009). 그동안의 범죄두려움의 측정은 연구자들의 설문 편의성에 따라 단일적인 문항으로 측정되어왔고, 개인 연구자들 또한 범죄두

16) 예컨대 Snedker(2011)에 따르면 여성인 경우에도 이웃과 그 환경, 사람들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라면 남성에 비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적다. 마찬가지로, 여성이라도 위험 평가와 지역 지식, 이웃에 대한 정보들이 구체적으로 제공될수록 범죄두려움이 감소함을 보고했다. 또한 범죄두려움에서 나타나는 성별의 차이에서 강간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는 압도적이지 않았다. 저자에 따르면, 강간에 대한 두려움은 성별로 인한 두려움보다는 ‘강간이라는 범죄’에 대한 사회화 과정의 결과물이다.

려움을 실증하기 위해 경험적으로 살펴보려는 노력은 매우 부족해왔다(Cheliotis, 2013; Cheliotis & Xenakis, 2011; Hough, 2002; Langworthy & Whitehead, 1986). 국내 범죄학의 학문적 생태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범죄두려움 연구들은 매우 소수의 연구자와 학술지 주도로 이루어져 연구의 틀은 다소 정형화되어 있다(한민정, 2019). 나아가, 현존하는 대표적인 범죄두려움 조사연구인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선 스토킹범죄나 보이스피싱사기 등 신종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고 있지 않아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범죄두려움에 관한 선행연구에 근거한 범죄두려움의 새로운 측정방안을 활용해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범죄두려움 측정 문항의 수정효과를 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연구 결과 크게 두 가지의 함의가 도출되었다. 첫째, 범죄두려움을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측정문항의 추가 내지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일 표본에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일반적 범죄두려움 문항과 이를 수정한 문항을 비교한 결과 수정된 문항에서 두려움의 수치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지적해온 범죄두려움 측정문제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범죄두려움 측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범죄현상의 증감여부와 두려움간의 불일치 현상 뿐만 아니라, 범죄라는 위험현상을 포착하기 위해 사용되어왔던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갖는 단어의 모호성과 추상성에서도 기인한다. 즉, 범죄두려움이라는 현상을 포착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은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문항을 사용하는 것에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실시해온 일반적 범죄두려움 측정을 위해 사용된 문항은 범죄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반응과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Farrall et al., 2009; Gray et al., 2006), 그리고 정서로 경험되는 범죄두려움의 빈도측정이 결여되어있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어왔다(Farrall & Gadd, 2004; Gray et al., 2008, 2011).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이 경험하는 실질적인 범죄두려움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고, 빈도 또한 드물게 경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두려움을 포착하기 위해 사용되어왔던 ‘두려움’이라는 표현은 역설적으로 범죄라는 위험현상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단어 자체가 갖는 모호성으로 인해 개인의 인지적 평가를 어렵게 한다. 이를 통해 실제 범죄 발생과 범죄두려움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 또는 범죄

현상에 비해 범죄두려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거나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범죄두려움의 측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였다.

둘째, 실질적인 범죄두려움은 낮은 빈도로 경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난 1년간 범죄피해자가 될지 모를까봐 걱정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빈도(frequency)의 수치를 응답을 하도록 한 결과 80% 이상의 응답자가 ‘아주 가끔’ 또는 ‘가끔’ 범죄피해자가 될지 모를까 봐 걱정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매우) 자주’ 걱정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8%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나 공포가 실제로는 매우 적게 경험되는 현상임을 암시하고, 일반적 범죄두려움을 빈도로 측정하여 그 수치가 경미하였음을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Jackson, 2013). 이러한 결과를 통해 Farrall 등(1997)이 제안한 바, 즉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해는 대체로 범죄현상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범죄두려움이 측정되는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검토하였다.

범죄에 대한 구체적(유형별)두려움을 위험인식의 문항으로 측정한 조사결과 두 가지의 연구함의가 도출되었다. 첫째, 현존하는 구체적 두려움의 측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각 범죄유형에 대한 발생가능성과 피해심각성을 판단하도록 한 문항에서 응답자의 범죄두려움(위험인식)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범죄유형별 구체적 두려움 측정에 비해 낮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측정과 차이가 존재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상적인 범죄두려움에 대한 측정방식은 응답자 스스로가 경험하는 범죄에 대한 감정을 포착하는 질문과 범죄현상에 특정되어있는 질문<sup>17)</sup>으로 이루어져야함이 보고되고 있다(Britto, 2011). 이에 본 연구에서 구체적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범죄에 대한 인식(risk perception)을 측정하였고, 기존 구체적 두려움의 수치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 두려움의 문항에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찬가지로 범죄유형 중 특히 성폭력범죄에서 성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범죄두려움의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알려졌던 성별의 영향보다 범죄에 대한 개인의 해석과 평가가 범죄현상 판단에 있어 오히려 더 큰 영향을

17) 범죄현상에 특정되어있는 질문이란 유형별 범죄를 추상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의 질문이 아닌 구체적인 범죄명을 제시하는 형식을 의미한다(Britto, 2011).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sup>18)</sup>

셋째, 범죄에 대한 두려움 측정을 위해 인식된 위협으로서의 평가 문항이 필요함이 나타났다. 일찍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포착하는 가장 정확한 측정치는 ‘위험’(risk)과 ‘안전도’(safety)라는 주장이 존재해왔으나(Ferraro, 1995), 현존하는 연구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에 대한 인지된 위협을 구분하지 않고 실증해왔다(Lim & Chun, 2015). 마찬가지로 구체적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두려움’이란 표현은 특정범죄에 대한 개인적 인식을 개별적으로 측정하지 못하고 단순한 하나의 일반 지표로 측정하여(Alper & Chappell, 2012), 범죄의 유형별 평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Miethe & Lee, 1982).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범죄를 그 발생가능성과 이로 인한 개인적인 영향을 바탕으로 예상하며, 상대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높고 범죄로 인한 심각한 결과가 예상될 때 더욱 빈번하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Jackson, 2011). 따라서, 범죄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감정적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선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한 인지된 위협평가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지각된 위협의 차이를 구분하고,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범죄에 대한 정서적 우려가 위협인식으로서의 범죄두려움을 예측하는 요인임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구체적 두려움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위협인식의 문항 사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는 자료상와 연구설계상 한계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마트폰 온라인 조사 상 수집된 표본의 대표성과 신뢰성 문제이다. 국민생활안전 실태조사에서 사용하는 표본조사의 방법인 층화 추출 및 계통 추출의 방식은 조사대상의 일부분(e.g. 500명 등)을 대상으로 하여도 조사대상 전체(e.g. 우리나라 성인 전체)와 조사결과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등 대표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다는 장점을 갖는다. 반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온라인 조사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패널에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그 중 실제 응답에 성실하게 참여한 대상자의 응답만을 포함시켜 분석하였기 때문

18) Levitin(2015)에 따르면, 특정 경험을 직접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해당 경험이 한 번의 경험이라 해도 매우 생생하면 해당 경험이 통계적인 예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해당 경험의 발생가능성을 매우 과장하여 판단할 수 있다. 즉, 사안의 판단 과정에서 인지적 편향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범죄에 대한 판단 시 이러한 인지적 오류의 영향이 성별의 영향보다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에 불특정 다수 대상의 조사방식에 비해 대표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이윤석 외, 2008). 즉, 엄격한 확률표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아가 스마트폰 온라인 조사는 대체로 온라인 기기에 익숙하고 인터넷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응답자들(e.g. 대도시 거주층, 저연령층, 고학력층 등)이 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학력수준이 낮은 계층들에게 접촉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또 다른 자료상의 한계로는 대상자의 주택유형(e.g.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등), 주거형태(e.g. 자기 집, 전세, 월세 등), 지역 사회의 특성(e.g. 이웃관계, 이웃참여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경찰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범죄두려움은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유형과 지역사회에 대한 개인적 인식의 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설문길이의 한계상 해당 정보들을 충분히 수집하지 못하였다.

연구설계상 한계로는 두려움 측정 시 기존문항과 수정·개선된 문항간의 비교를 위해 임의적으로 전체 참여한 응답자를 절반으로 나누어 설문응답을 수집했기 때문에 단순한 평균분석 이상의 통계적 방법을 실시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실태조사의 문항 중 강도범죄 유형을 제외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설문지 길이의 한계와 수집절차상의 제한점으로 인해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서 다루는 범죄유형을 모두 파악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제외한 범죄유형들을 모두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기존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재분석하여 사용해왔던 범죄두려움 선행연구의 형식을 탈피하여 경험적인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나아가 본 연구는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범죄두려움 측정문항과 이 문항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이를 기존 문항과 직접 비교함으로써 동일 표본 내의 비교를 실시해 직접적인 문항개선의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분석방법과 자료상의 한계를 보완한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사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률 추출방식으로 추출하여 응답자를 추출하고, 설문응답을 온라인을 통해 응답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이희준, 2020). 또한, 온라인패널의 편향을 보정하기 위해 성향조정가중법(propensity adjustment weighting)<sup>19)</sup>과 같은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대표성 있는

준거조사와 온라인조사를 함께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룬 범죄유형외에 증가하고 있는 기타 유형의 범죄도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성폭력범죄 유형 중 불법촬영유포범죄를 다루었으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중에는 가해자의 강요에 의해 피해자가 직접 영상물을 촬영, 제공하는 형태 등과 같은 형태 또한 적지않다(최이문, 안재경, 2020). 불법영상촬영 행위보다 한 단계 진화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

19) 성향조정가중법이란 Rosenbaum와 Rubin(1983, 1984)에 의해 처음 제안된 것으로 관측연구에서 집단 간에 존재하는 성향적 차이를 제거하는 방안으로 집단 간 공정한 비교를 가능케 한다. 이를 위해선 확률적 표본추출에 의한 충분한 규모의 준거조사(reference survey)가 요구된다(허명희, 조성겸, 2010).

## 참고문헌

- 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 김민영, 한민경, 박희정. (2019).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 최수형, 박정선. (200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형민, 최수형, 김남희, 이선형, 조제성. (2021).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 분석보고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안소현, 김근영, 양재원. (2019). 정서예측 및 회상의 정확성에 있어 특질불안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8(3), pp.401-417.
- 이윤석, 이지영, 이경택. (2008). 온라인 조사의 응답오차에 대한 연구: 설문 응답 시간과 응답 성실성의 관계. *조사연구* 9(2), pp.51-83.
- 이희준. (2020). *KIPA 조사포럼* 34, 한국행정연구원.
- 최이문, 안재경. (2020). 조직적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과 유형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4(3), pp.185-210.
- 한민경. (2019). 범죄두려움 연구에 정식이 존재하는가?: 범죄두려움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범죄학* 13(2), pp.33-56.
- 허명희, 조성검. (2010). 자원자 패널에 의한 인터넷 조사의 성향조정 검증. *조사연구* 11(2), pp.1-28.
- Alper, M., & Chappell, A. T. (2012). Untangling Fear of Crime: A Multi-theoretical Approach to Examining the Causes of Crime-Specific Fear. *Sociological Spectrum*, 32(4), pp.346-363. doi:10.1080/02732173.2012.664048
- Bar-Anan, Y., Liberman, N., & Trope, Y. (2006). The association between psychological distance and construal level: Evidence from an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5(4), pp.609-622. doi:10.1037/0096-3445.135.4.609
- Berenbaum, H. (2010). An initiation-termination two-phase model of worrying.

-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8), pp.962-975. doi:10.1016/j.cpr.2010.06.011
- Britto, S. (2011). 'Diffuse anxiety': the role of economic insecurity in predicting fear of crime. *Journal of Crime and Justice*, 36(1), pp.18-34. doi:10.1080/0735648x.2011.631399
- Cheliotis, L. K. (2013). Neoliberal capitalism and middle-class punitiveness: Bringing Erich Fromm's "materialistic psychoanalysis" to penology. *Punishment & Society*, 15(3), pp.247-273. doi:10.1177/1462474513483692
- Cheliotis, L. K., & Xenakis, S. (2011). Crime, Fear of Crime and Punitiveness. In *Crime and Punishment in Contemporary Greece: Inter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s* (pp.1-41). Peter Lang. Retrieved from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abstract=1963504>
- Cobbina, J. E., Miller, J., & Brunson, R. (2008). Gender, neighborhood danger, and risk avoidance strategies among urban African American youth. *Criminology*, 46, pp.501-538.
- Farrall, S. & Gadd, D. (2004). The frequency of the fear of crim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4, pp.127-132.
- Farrall, S. B., Ditton, J., & Gilbhris, E. (1997). QUESTIONING THE MEASUREMENT OF THE 'FEAR OF CRIME': Findings from a Major Methodological Stud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7(4), pp.658-679. doi:10.1093/oxfordjournals.bjc.a014203
- Farrall, S. D., Jackson, J., & Gray, E. (2009). *Social Order and the Fear of Crime in Contemporary Times*. Oxford University Press.
- Ferraro, K. F. (1995). *Fear of Crime: Interpreting Victimization Ris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Ferraro, K. F., & LaGrange, R. L. (1987). The Measurement of Fear of Crime. *Sociological Inquiry*, 57(1), pp.70-97. doi:10.1111/j.1475-682x.1987.tb01181.
- Ferraro, K. F., & LaGrange, R. L. (1992). Are older people most afraid of crime? Reconsidering age differences in fear of victimization. *Journal of*

- Gerontology*, 47(5), pp.277-287.
- Fisher, B. S., & May, D. (2009). College student's crime-related fears on campus: Are fearprovoking cues gendered?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5, pp.300-321.
- Forgas, J. P. (1995). Mood and judgment: The affect infusion model (AIM). *Psychological Bulletin*, 117(1), pp.39-66.
- Franklin, C. A., & Franklin, T. W. (2009). Predicting fear of crime: Considering differences across gender. *Feminist Criminology*, 4, pp.83-106.
- Frijda, N., Manstead, A., & Bem, S. (2000). The influence of emotions on beliefs. In N. H. Frijda, A. S. R. Manstead, & S. Bem (Eds.), *Emotions and Beliefs: How Feelings Influence Though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briel, U., & Greve, W. (2003). The psychology of fear of crim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perspective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3(3), 600-614. <https://doi.org/10.1093/bjc/43.3.600>
- Garofalo, J., & Laub, J. (1978). The fear of crime: Broadening our perspective. *Victimology: An International Journal*, 3, pp.242-253.
- Goodey, J. (1994). Fear of Crime: What Can Children Tell Us?,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3(3), pp.195-210. doi:10.1177/026975809400300302
- Gouseti, I. (2016). *Fear of crime as a way of thinking, feeling and acting: An integrated approach to measurement and a theoretical examination of psychological distance and risk construal*. A thesis submitted to the Department of Methodology of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London.
- Gray, E., Jackson, J., & Farrall, S. (2006). *Reassessing the Fear of Crime: Frequencies and Correlates of Old and New Measures*. SSRN Electronic Journal. doi:10.2139/ssrn.996314
- Gray, E., Jackson, J., & Farrall, S. (2008). Reassessing the Fear of Crime.

-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5(3), pp.363-380. doi:10.1177/1477370808090834
- Gray, E., Jackson, J., & Farrall, S. (2011). Feelings and Functions in the Fear of Crime: Applying a New Approach to Victimisation Insecurit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51(1), pp.75-94. doi:10.1093/bjc/azq066
- Hough, M. (2002). Populism and Punitive Penal Policy. *Criminal Justice Matters*, 49(1), 4-5. doi:10.1080/09627250208553483
- Hough, M. (2004). Worry about crime: mental events or mental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7(2), pp.173-176. doi:10.1080/1364557042000194559
- Jackson, J. (2004). *Experience and expression : social and cultural significance in the fear of crime* [online]. London: LSE Research Online. Available at: <http://eprints.lse.ac.uk/archive/00000804> Available online: June 2006
- Jackson, J. (2006). Introducing fear of crime to risk research. *Risk Anal*, 26(1), 253-264. doi:10.1111/j.1539-6924.2006.00715.x
- Jackson, J. (2011). Revisiting Risk Sensitivity in the Fear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8(4), pp.513-537. doi:10.1177/0022427810395146
- Jackson, J. (2013). Cognitive closure and risk sensitivity in the fear of crime.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Wiley-Blackwell. Retrieved from <http://eprints.lse.ac.uk/52629/#.UygRHnSja7Q.mendeley>
- Killias, M. (1990). Vulnerability: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of a key variable in the genesis of fear of crime. *Violence and Victims*, 5, pp.97-108.
- LaGrange, R. L., & Ferraro, K. F. (1989). Assessing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perceived risk and fear of crime. *Criminology*, 27, pp.697-719
- Langworthy, R. H., & Whitehead, J. T. (1986). Liberalism and Fear As Explanations of Punitiveness. *Criminology*, 24(3), pp.575-591. doi:10.1111

/j.1745-9125.1986.tb00391.x

- Levitin, D. J. (2015). *The organized mind: Thinking straight in the age of information overload*. Plume, an imprint of Penguin Random House LLC.
- Lim, H., & Chun, Y. (2015). The Limitations and Advancements in Measuring Fear of Crim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Governance*, 5(2), pp.140-148. doi:10.5296/jpag.v5i2.7727
- Madriz, E. (1997). *Nothing bad happens to good girls: Fear of crime in women's liv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iethe, T. D., & Lee, G. D. (1982). Fear of Crime Among Older People: A Reassessment of the Predictive Power of Crime-Related Factors. *Sociological Quarterly*, 25, pp.397-415.
- Pleysier, S. (2009). *'Angst voor Criminaliteit' Onderzocht*. De Brede Schermerzone Tussen Alledaagse Realiteit en Irrationeel Fantoom. Faculty of Law, Research Unit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Leuven Institute of Criminology. Leuven: Catholic University of Leuven. PhD Thesis
- Roberts, B. (2014). Fear of Walking Alone at Night. In: Michalos, A.C. (eds) *Encyclopedia of Quality of Life and Well-Being Research*. Springer, Dordrecht. [https://doi.org/10.1007/978-94-007-0753-5\\_1023](https://doi.org/10.1007/978-94-007-0753-5_1023)
- Rosenbaum, P., & D. B. Rubin. (1983).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Biometrika*, 70, pp.41-55.
- Rosenbaum, P., & D. B. Rubin. (1984). Reducing Bias in Observational Studies Using Subclassification on the Propensity Score.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79, pp.516-524.
- Sacco, V. F. (1990). Gender, fear, and victimization: A preliminary application of power control theory. *Sociological Spectrum*, 10(4), pp.485-506. doi:10.1080/02732173.1990.9981942
- Sheeran, P., Harris, P. R., & Epton, T. (2014). Does heightening risk appraisals change people's intentions and behavior? A meta-analysis of experimental

-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40(2), pp.511-543. doi: <https://doi.org/10.1037/a0033065>
- Skogan, W. G., & Maxfield, M. G. (1981). *Coping with crime : individual and neighborhood reactions*.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Snedker, K. A. (2006). Altruistic and Vicarious Fear of Crime: Fear for Others and Gendered Social Roles. *Sociological Forum*, 21(2), pp.163-195. doi:10.1007/s11206-006-9019-1
- Todorov, A., Goren, A., & Trope, Y. (2007). Probability as a psychological distance: Construal and preferenc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3), pp.473-482. <https://doi.org/10.1016/j.jesp.2006.04.002>
- Tourangeau, R., Rips, L. J., & Rasinski, K. (2000). *The Psychology of Survey Respon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ope, Y., Liberman, N., & Wakslak, C. (2007). Construal Levels and Psychological Distance: Effects on Representation, Prediction, Evaluation, and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7(2), pp.83-95. doi:10.1016/S1057-7408(07)70013-X.
- Vanderveen, G. (2006). *Interpreting Fear, Crime, Risk and Unsafety: Conceptualisation and Measurement*. Eleven International Publishing.
- Wakslak, C., & Trope, Y. (2009). The Effect of Construal Level on Subjective Probability Estimates. *Psychological Science*, 20(1), pp.52-58. <https://doi.org/10.1111/j.1467-9280.2008.02250.x>
- Warr, M. (1984). Fear of victimization: Why are women and elderly more afraid?, *Science Quarterly*, pp.681-702.
- Warr, M. (1987). Fear of victimization and sensitivity to risk.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1), pp.29-46.
- Wilson, T. D., & Gilbert, D. T. (2003). Affective forecasting.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5, pp.345-411. Elsevier Academic Press. [https://doi.org/10.1016/S0065-2601\(03\)01006-2](https://doi.org/10.1016/S0065-2601(03)01006-2)

##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Fear of Crime: Fear of Crime as Emotional and Cognitive Evaluation\*

Ahn, Jaekyung\*\* · Choi, Yimoon\*\*\*

The fear of crime, which is defined as the psychological state of being afraid and worried about becoming a victim of crime, is distinct from the actual crime rate. This difference may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fear of crime is often high in reality, but also due to incomplete measurement of fear of crime that fails to reflect the actual circumstances. In light of this, the present study defined fear of crime as both an emotional aspect (general fear: “Have you ever been worried about becoming a victim of crime in the past year?”) and a cognitive evaluation (specific fear: modified to ‘risk perception’ questions regarding the likelihood and severity of the occurrence). A survey of 221 general population was conducted using both the original and modified fear of crime questions to compare the two types and determine if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measurement value. The study found that the level of fear of crime was significantly lower in both types of modified questions. The author then investigated the impact of gender, a key factor affecting fear of crime, on both general and specific fear of crime and found that gender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fear of crime in the modified questions. This indirectly suggests that fear of crime is formed through subjective risk assessment of the crime risk associated with gender, rather than gender itself.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empirical study, the author argues for the need to supplement the relevant questions

---

\* This manuscript written based on the revised version of the first author's doctoral thesis from 2023.

\*\* Instructor at Hannam University, PhD in Criminolog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t. of Administration,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yimoon@police.ac.kr.

of the “National Survey on Public Safety,” one of the few studies that examines fear of crime on a nationwide scale.

❖ Key words: fear of crime, general fear, specific fear, risk perception,  
National Survey on Public Safety